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서

사용 시설물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폐동 397)  
(재산의 표시) 침전지와 여과지 및 정수지 상부  
태양광 발전 시설(2,995kW) 설치 사용 공간 48,000m<sup>2</sup>

위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용자 OCI남부태양광발전(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태양광발전」을 위한 태양광모듈, 전기실, 배선 등 필요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사용료 및 납부는 2013.11.07자「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 따른다.

1.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설치용량(kW) × 사용요율(원/kW·년)

- 2013년 사용요율 : 25,000원/kW(부가세 포함)  
(향후 사용요율은 매년초 서울시가 산정한 사용요율 적용)
- 설치공간 사용료에는 최종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실 등 주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사용료를 포함한다.
- 설치공간 사용료 부과는 위 산식에 따라 계약시 추정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발전시설 준공시 최종 설치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조정·부과한다.

2. “을”은 다음연도 “설치공간 사용료”를 매년 12월 30일까지 1회 “갑”에게 선납한다. 다만, 최초년도의 “설치공간 사용료”는 착공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착공 60일 이내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설치공간 사용료”를 선납한다.

3. “설치공간 사용료”의 연체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공간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4조(출입제한)** ‘갑’의 시설 보호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완료시까지 공사관계자(출입자 명단에 명시된 인원)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실시협약서 제25조(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 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서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제9조(관할청 허가)** ‘을’은 사용허가 재산에 시설 및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실시협약서”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협약의 해지시나 “을”이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을’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을’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갑’의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사용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대로 반환 하여야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강제철거 등 원상 복구 시까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원상복구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을’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갑’에 손해를 ~~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본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 일체에 대하여 관리청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용기간의 연장) 실시협약서 제7조(시설물의 귀속) 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18조(원상복구시 원인자부담) ‘갑’의 필요시 또는 사용허가 종료시 원상 복구를 위한 사용시설과 성토재 제거 및 각종 반입물의 외부 반출 등 정수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9조(시설사용에 따른 기타 준수사항)

- ‘을’은 사용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손상을 시켰을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고 ‘갑’의 부지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갑’의 위탁업체와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 ‘을’은 관련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허가사항

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3. '을'은 필요시 악취,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설치한 사용시설물이 '갑'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 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한때에는 자체 없이 서울시(녹색에너지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을'은 사용목적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원인제공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 시설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의 어구해석이 쌍방간 다를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수정·변경)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 1.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조건 1부.  
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위치도 1부.

2013년 11월 25일

갑(사용 허가자)	을(사용자)
상 호 :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상 호 : OCI남부태양광발전(주)
대표자 : 권 병 효	대표자 : 임 민 규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교산로 171 (삼파동 397)	주 소 : 전남 군산시 외항로 82
사업자등록번호 : 132-83-03990	사업자등록번호 : 401-81-50736

## 사용허가 조건

제1조(기본사항) 본 계약은 2013년 11월 07일 체결한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제2조(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태양광발전설비는 수돗물 생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수돗물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돗물생산의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침전지와 여과지 및 정수지는 1998년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및 추가적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20년 이상을 예상하는 구조적 안전진단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착공전에 받아 안전이 확인된 후에 시공한다.
- 나.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진출입 및 이동통로 확보, 장비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전에 가입하여 1년단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가입한다.
- 다.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정수장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전에 가입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 라. 향후 태양광발전설비 운영중단시 태양광발전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되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전에 가입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 마.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하여 침전지 지하층의 자연채광 방해에 대해서는 보완조명 등의 시공을 한다.
- 바. 피뢰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시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안전한 수질 관리) 태양광발전설비는 수질관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질관리의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염소, 응집제 등을 사용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식 등 태양광발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 나.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제 등 오염물질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 주관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침전지 및 여과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후의 오염물질은 별도로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킨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설비는 정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침전지 내부에는 슬러지 컬렉터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지대는 설치하지 못하며, 보수작업을 위한 침전지별 작업투입구를( $B \times H \times L$ ,  $5m \times 5m \times 5m$  이상) 확보한다.
- 나. 침전지 외부에는 슬러지 컬렉터 수리 및 설치 공간확보를 위하여 침전지 끝단 5m이내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 다. 침전지 상부에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와의 이격거리를 2.5m로 유지한다.
- 라. 여과지 상부에는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강우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를 확보한다.
- 마. 위 조건 외에도 긴급하게 시설물 유지보수시 태양광발전설비가 장애가 되면 즉시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허가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으며, 조건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및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위치도



사업주	사업부지 표기	면적 / 용량	비고
해맞이태양광발전(주)		48,000m <sup>2</sup> / 2,966kW	한화큐셀코리아(주)
OCI남부태양광발전(주)		48,000m <sup>2</sup> / 2,995kW	OCI(주)